2024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929

2024년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4. 5.27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24. 5.30

4. 상정일자 :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24. 6.20)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24. 6.24)

-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 O 의안번호 제1925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등 9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 안건의 주요 내용으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변경안 등 7 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예치금을 회수 하는 등 재무활동 조정으로 인한 2024년도 수입·지출계획의 변경으로, 총 853억 원의 재무활동 지출금액이 증액되었음
- 성평등가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2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무활동으로 인한 6억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외에, 행정운영경비에서 16백만 원을 감액하고, 정책사업 37백만 원을 편성하고자 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1929호, **2024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2.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가. 제안이유

- 1).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등 조정으로 2024년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보다 20%를 초과하여 변경되었음.
- 2).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 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전년도(2023년)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 금액이 당초 1,423백만원에서 1,828백만원으로 405백만원 증액하였고, '보조금반 환수입' 금액이 당초 8백만원에서 15백만원으로 7백만원 증액하였음.
- 예치금 회수 :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 미집행(202백만원), 일반사업비 및 기본경비 미집행(118백만원), 이자수입 증가분(81백만원), 보조금 반환수입 증가분(4백만원) *'순천만 국가정원 내 서울정원 재조성' 사업비 신규편성
- 보조금 반환수입: '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사업 집행잔액 증가분(6백만원), '청소년 역사문화교류' 사업 집행잔액 증가분(1백만원)
- 2).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 750백만원에서 1,162백 만원으로 412백만원 증가하여 55% 변경되었음.

3).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단위 : 천원, %)

장/관/항/목	당 초 (A)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B)	증 감 (C=B-A)	증 감 률 (D=C/A)
합 계	2,810,837	3,223,343	412,506	14.7
세외수입	88,274	95,250	6,976	7.9
경상적세외수입	80,041	80,041	_	_
이자수입	80,041	80,041	_	_
공공예금이자수입	80,000	80,000	-	_
기타이자수입	41	41	-	_
임시적세외수입	8,233	15,209	6,976	84.7
보조금반환수입	8,233	15,209	6,976	84.7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233	3,222	989	44.3
위탁비반환수입	6,000	11,987	5,987	99.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22,563	3,128,093	405,530	14.9
보전수입등	1,422,563	1,828,093	405,530	28.5
예치금회수	1,422,563	1,828,093	405,530	28.5
예치금회수	1,422,563	1,828,093	405,530	28.5
내부거래	1,300,000	1,300,000	-	_
전입금	1,300,000	1,300,000	-	_
기타회계전입금	1,300,000	1,300,000	_	

- 지출계획 변경내용

(단위 : 천원, %)

	정책/단위/세부/편성목	당 초 (A)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D)	중 감 (E=D-A)	증 감 률 (F=E/A)
	합 계	2,810,837	3,223,343	412,506	14.7
시	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2,057,800	2,057,800	_	-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2,057,800	2,057,800	-	_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300,000	300,000	-	_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1,000,000	1,000,000	-	-
	타 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250,000	250,000	-	_
	랜선 나눔 캠퍼스 운영	472,800	472,800	_	-
	약자와 동행하는 농촌힐링 지원사업	35,000	35,000	_	_
재	무활동	750,037	1,162,543	412,506	55.0
	보전지출	750,037	1,162,543	412,506	55.0
	여유자금 예치	750,037	1,162,543	412,506	55.0
행	정운영경비	3,000	3,000	_	_

3. 검토의견

- 2024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23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4억 500만원)와 보조금 반환수입(700만원)이 증가하여 수입계획을 변경하고, 수입계획과 연동하 여 지출계획중 여유자금 예치(4억 1,200만원)에 전액반영하고자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1)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 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①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을 당초 지출 계획(7억 5,000만원)보다 55.0%, 4억 1,2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 (11억 6,200만원)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의회로부터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표 3-1〉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백만원. %)

			(_ //	•
정 책 사 업 / 단 위 사 업 / 세 부 사 업	당 초	기 금 운 용 계획변경안	증 감	증 감 률
	(A)	(B)	(C=B-A)	(D=C/A)
지 출 합 계	2,810	3,223	412	14.7
시 정 현 안 협 업 기 반 조 성	2,057	2,057	_	-
재 무 활 동 (행정국 대외협력과)	750	1,162	412	55.0
보 전 지 출 (대외협력계정 국내협력계정)	750	1,162	412	55.0
여 유 자 금 예 치 (국 내 협 력 계 정)	750	1,162	412	55.0
행 정 운 영 경 비 (행정국 대외협력과)	3	3	-	-

※ 자료근거 : ①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지출계획, ②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24, 5,27) 재구성

- 동 계정의 운용계획 변경안은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자금 등을 '24년도 수입계획에 반영하고, 이와 연동하여 지출계획중 여유자금을 예치 금으로 적립하고자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의 운용계획을 변경 요청한 것임
 -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²⁾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6조(기금의 용도)

① 국내협력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2.} 국내 타지방자치단체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

^{3.}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토론요지: 「생략」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 2.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

가. 소위원회

○ 위원구성:

- 위 원 장 : 이병도(도시계획균형)

- 부위원장 : 신복자(기획경제), 박승진(주택공간)

- 소위원회: 구미경(행정자치), 박수빈(행정자치)

김재진(환경수자원), 김규남(문화체육관광)

유만희(보건복지), 김 경(보건복지)

이상욱(도시안전건설), 신동원(주택공간)

박영한(도시계획균형), 이경숙(교통)

정지웅(교육), 전병주(교육)

※ '24년도 본예산 심사시 구성된 소위원회로 계속 운영

나. 소위원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 2024. 6.21(금) 15:00 ~ 18: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내 용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조정

○ 제2차 소위원회

- 일 시 : 2024. 6.22(토) 14:30 ~ 18: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내 용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조정

○ 제3차 소위원회

- 일 시 : 2024. 6.23(일) 15:00 ~ 2024. 6.24(월) 03: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내 용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조정

Ⅷ. 부대의결:「해당 없음」

Ⅷ. 심사결과: 원안 가결 (2024. 6.24)

2024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1929

제출년월일: 2024년 5 월 27일 제 출 자: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등 조정으로 2024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보다 20%를 초과하여 변경되었음.
- 나.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년도(2023년)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 금액이 당초 1,423백만원에서 1,828백만원으로 405백만원 증액하였고, '보조금반환수입' 금액이 당초 8백만원에서 15백만원으로 7백만원 증액하였음.
 - 예차금 화수 : '타지자체 재해재난구호지원' 미집행(202백만원), 일반사업비 및 기본경비 미집행(118백만원), 이자수입 증가분(81백만원), 보조금 반화수입 증가분(4백만원)
 - 보조금 반환수입 : '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사업 집행잔액 증가분(6백만원), '청소년 역사문화교류' 사업 집행잔액 증가분(1백만원)
- 나.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 750백만원에서 1,162백만원으로 412백만원 증가하여 55% 변경되었음.

다.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 수입계획 변경내용

(단위 : 천원, %)

장/관/항/목	당 초 (A)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B)	증 감 (C=B-A)	증 감 률 (D=C/A)
합 계	2,810,837	3,223,343	412,506	14.7
세외수입	88,274	95,250	6,976	7.9
경상적세외수입	80,041	80,041	_	_
이자수입	80,041	80,041	_	_
공공예금이자수입	80,000	80,000	-	_
기타이자수입	41	41	-	-
임시적세외수입	8,233	15,209	6,976	84.7
보조금반환수입	8,233	15,209	6,976	84.7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233	3,222	989	44.3
위탁비반환수입	6,000	11,987	5,987	99.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22,563	3,128,093	405,530	14.9
보전수입등	1,422,563	1,828,093	405,530	28.5
예치금회수	1,422,563	1,828,093	405,530	28.5
예치금회수	1,422,563	1,828,093	405,530	28.5
내부거래	1,300,000	1,300,000	_	-
전입금	1,300,000	1,300,000	_	_
기타회계전입금	1,300,000	1,300,000	_	-

- 지출계획 변경내용

(단위: 천원, %)

정책/단위/세부/편성목	당 초 (A)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D)	중 감 (E=D-A)	증 감 률 (F=E/A)
합계	2,810,837	3,223,343	412,506	14.7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2,057,800	2,057,800	_	_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2,057,800	2,057,800	_	_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300,000	300,000	_	_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1,000,000	1,000,000	_	_
타 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250,000	250,000	_	_
랜선 나눔 캠퍼스 운영	472,800	472,800	-	_
약자와 동행하는 농촌힐링 지원사업	35,000	35,000	_	_
재무활동	750,037	1,162,543	412,506	55.0
보전지출	750,037	1,162,543	412,506	55.0
여유자금 예치	750,037	1,162,543	412,506	55.0
행정운영경비	3,000	3,000	_	_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대외협력과 지역상생팀 김근형(☎ 2133-6658)